

대 법 원

제 1 부

판 결

사 건 2021도1731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
피 고 인 김드보라 (*****-*****)
주거 제천시 청전대로 ***-*, * 동 ***호
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***, *층
등록기준지 강릉시 임당동 ***
상 고 인 검사
변 호 인 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
담당변호사 고* *, 이* *, 권* *, 이* *
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21. 12. 1. 선고 2021노189 판결
판 결 선 고 2022. 12. 16.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,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.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의 판단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9조 제1호, 제18조 제3항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_____

 대법관 박정화 _____

주 심 대법관 김선수 _____

 대법관 노태악 _____